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가보훈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에 관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회 운영에 대한 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가 임원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개정(법률 제19524호, 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됨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시정요구없이 임원 해임요구를 할 수 있는 상세 기준을 정하고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하는 등 수익사업 관련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재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정요구 없는 임원 해임요구의 세부 기준)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정을 요구하여도 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물리적으로 명백한 경우
2. 임원이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회계 운영에서 총자산의 1%에 해당하는 중대한 부정을 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국가보훈부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3. 임원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재산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1천만원 이상 횡령·배임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국가보훈부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령[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1호	500만원
나.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수익 사업을 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2호	500만원
다.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3호	500만원
라. 법 제16조의9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4호	500만원
마.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5호	500만원
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6호	500만원
사. 법 제2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2조 제2항제1호	300만원
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2조 제2항제2호	3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과	
연 락 처	(044) 202 - 5757